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8
----------	------

발의연월일 : 2012. 9. 4.

발 의 자 : 진 영 · 남경필 · 신의진
김태원 · 김세연 · 여상규
고희선 · 김을동 · 정문현
김재원 · 신동우 · 정우택
나성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고 있음.

이 중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과 비교할 때 가맹점에 수수료 부담을 주지 않는 건전 소비를 유도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여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없는 현금영수증 이용을 촉진하고 건전 소비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2호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신용카드등사용액 중에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제2항을 개정하여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조세지출은 2014년 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2013~2014년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실시함
-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액 자료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2009) 통계에서 72.2%와 27.8% 비중을 고정시켜 사용하였음
- 2010~2014년의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액은 경상민간소비 증가율로 연장
- 동 법안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가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함

3. 비용추계 결과

-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소득세수는 2013 ~ 2014년 중 총 2,15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표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시 세수효과

	2013	2014	합계
소득세수 감소(억원)	1,048	1,112	2,159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진영 의원실 이종용 비서관
연락처	788-2925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
 - 현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국외사용 제외)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연간 300만원과 당해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09년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당해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으나 2010년에는 상향조정된 것임
 -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은 20%이나 체크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은 30%임
-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조세지출액) 규모를 추계해보면 2010년 6,355억원으로 분석됨
 -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표 2]의 A)에 대하여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 [표 2]의 B)을 적용하여 각 구간별 소득세 감면액을 구하고 이를 합하여 전체 소득세 감면액(조세지출액)을 추계하였음

[표 2]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조세지출액(2010년)

과세 표준규모별	신용카드등소득공제액		실효세율 (%, B)	조세지출액 (억원) A×B/100
	인원(인)	소득공제액 (백만원, A)		
1천만 이하	2,663,037	4,589,344	2.7	1243
1.2천만 이하	397,950	757,150	3.0	230
3천만 이하	1,837,366	3,723,646	6.8	2528
4천만 이하	383,826	815,294	10.4	847
4.6천만 이하	146,222	311,843	11.3	351
6천만 이하	195,896	419,511	13.0	544
7천만 이하	65,758	142,359	15.0	214
8천만 이하	36,369	79,000	16.2	128
8.8천만 이하	17,528	38,120	17.0	65
1억 이하	15,905	34,884	18.3	64
2억 이하	25,382	56,463	22.5	127
3억 이하	1,896	4,305	26.3	11
5억 이하	454	1,126	28.6	3
10억 이하	85	224	30.5	1
10억 초과	10	28	32.6	0
합 계	5,787,684	10,973,295	10.8	6,355

자료: 국세청(2011),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가정

-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조세지출은 2014년 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2013~2014년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실시함
-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증가율은 민간소비증가율과 같을 것으로 가정

[표 3] 민간소비증가율(명목)

	2010	2011	2012	2013	2014
민간소비증가율(%)	7.1	6.1	5.3	6.1	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5), 『2012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동 법안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가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함
 -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증가하는 대신 신용카드의 사용이 줄어드는 경우 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임

□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액 자료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2009) 통계에서 72.2%와 27.8% 비중을 고정시켜 사용하였음

□ 3억 초과분의 3%p 세율인상분에 대한 과표 대비 유효세율 변화분은 다음과 같음

[표 4] 유효세율(세액/과표) 변화분

(단위: %p)

	8,800만원 초과 구간			3억초과 구간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종합소득	0.95	0.95	0.95	1.85	1.84	1.82
근로소득	0.31	0.31	0.30	1.37	1.36	1.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내부 계산

3. 비용추계 결과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을 10%p 상향조정하면 이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조세지출액) 변화는 2,159억원으로 추계됨

○ A열: 당해연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년도 소득공제액에 경상 민간소비 증가율(2013년 6.1%, 2014년 6.6%)만큼 확대될 것으로 가정

○ B열: 현금영수증 공제율 10%p 상향 적용시 소득공제는 A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에서 현금영수증 분(27.8%)을 구한 후, 20%에서 30%로 확대되는 만큼(0.5배) 소득공제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추산

○ C열: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2010년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8,8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2010년의 유효세율에 [표 5]의 유효세율 변화분을 더하여 구함(이는 2012년부터 명목세율이 변한 것을 반영하는 것임)

○ D열: 현금영수증 사용분 소득공제액 변화분(B열)에 실효세율(C열)을 곱하여 세수 변화를 구함

[표 5]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인상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

과표규모별	2013년				201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사용분 소득공제	실효세율	조세지출 변화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사용분 소득공제	실효세율	조세지출 변화분
	(A)	(B=A× 0.278×0.5)	(C)	(D=B×C)	(A)	(B=A× 0.278×0.5)	(C)	(D=B×C)
합계	130,076	18,081	-	1,048	138,010	19,183	-	1,112
1천만 이하	54,401	7,562	2.7	205	57,720	8,023	2.7	217
1.2천만 이하	8,975	1,248	3.0	38	9,523	1,324	3.0	40
3천만 이하	44,140	6,135	6.8	416	46,832	6,510	6.8	442
4천만 이하	9,664	1,343	10.4	140	10,254	1,425	10.4	148
4.6천만 이하	3,697	514	11.3	58	3,922	545	11.3	61
6천만 이하	4,973	691	13.0	90	5,276	733	13.0	95
7천만 이하	1,688	235	15.0	35	1,790	249	15.0	37
8천만 이하	936	130	16.2	21	994	138	16.2	22
8.8천만 이하	452	63	17.0	11	479	67	17.0	11
1억 이하	414	57	18.6	11	439	61	18.6	11
2억 이하	669	93	22.8	21	710	99	22.8	23
3억 이하	51	7	26.6	2	54	8	26.6	2
5억 이하	13	2	29.9	1	14	2	29.9	1
10억 이하	3	0	31.9	0	3	0	31.9	0
10억 초과	0	0	33.9	0	0	0	33.9	0

-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소득세수는 2013 ~ 2014년 중 총 2,15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표 6]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시 세수효과

	2013	2014	합계
소득세수 감소(억원)	1,048	1,112	2,159